

2020. 4월 반상회 홍보자료

연번	제목	담당부서
1	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시행	일자리경제과
2	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실시	교통행정과



1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시행 알림

- ◇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
- **신청대상**: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- 지원내용: 3개월분(4~6월 청구서)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
 -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
 -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(12월)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(콜센터로 문의)
 -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, 5~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
- **신청기간 :** 2020. 4. 16.(목) ~ 5. 15.(금)
- **신청방법** : 부산도시가스 콜센터(1544-0009)로 문의 및 접수

■ 구비서류

-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 -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
- O 소상공인
 -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
 -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*로 판단하는 경우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(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)
 - 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신청 가능

자료제공 :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☎051-749-4525

2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실시

◇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 대상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■ 교통유발부담금 개요

- 대상시설: 1,000㎡이상 시설물 (각 층 바닥면적 합)
- 부과대상기간: 2019. 8. 1. ~ 2020. 7. 31.(1년간)
-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: 2020. 7. 31. 현재 시설물 소유주
-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: 2020. 10월 / 2020.10.16. ~10.31.
- **납부장소** : 시중은행, 전국우체국, 농·수협,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등
- ◆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시의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개량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.

■ 대상시설물 현장조사

- 대상시설: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이상 시설물 (개별 분양의 경우 160㎡〈공용전용 면적포함〉이상)
- 조사기간: 2020. 4. 1. ~ 7. 31. (4개월간)
- 조사방법: 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이용현황, 변동사항 등 조사

협조사항

-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원의 방문 및 이용실태조사 협조
- 관련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> 오피스텔, 상가 등 관리사무소

자료제공 :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☎051-749-4572